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988 제출연월일: 2024. 7. 19.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 장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안 제46조의2 신설)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 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대기기간 연장(안 제49조제2항, 제77조

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종전에는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 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되는 경 우 등에는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2(구직급여일액의 감액) ①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6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77조의8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고 그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2.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으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 여를 지급받은 경우
 - 3.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4. 제50조(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 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로 본다.
 - 1.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기준기간 동안 이직한 경우로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하고 그 이직한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제69조의6 중 "제49조"를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7조의3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기준기간 동안 이직한 경우로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 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하고 그 이직한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77조의8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기준기간 동안 이직한 경우로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 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 하고 그 이직한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일액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6조의2(구직급여일액의 감액)
	①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
	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6조, 제77조의3제4
	항 및 제77조의8제5항에도 불구
	하고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 금액
	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
	급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
	<u>다.</u>
	1.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
	상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
	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u>구</u> 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제49조(대기기간) ①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 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 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 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

- 2.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 상을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으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3.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 상을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로 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4. 제50조(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49조(대기기간)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각호의 사유별로 4주의

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 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 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자영업 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 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다음 각호의 사유 중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대기기간이 가장 긴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 1.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 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 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 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경우
- 3. 기준기간 동안 이직한 경우로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하고 그이직한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 다.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 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 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 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 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 제1항ㆍ제43조제3항 중"이직" 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 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 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 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 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② (생략)

-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생략)
 -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

제외한다)
제69조의9(준용) 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현행
과 같음)
6

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 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 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 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 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 기기간으로 본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7)·⑧ (생 략)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

1 이 /처체되 가이

- 1. 2. (현행과 같음)
- 3.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기준기간 동안 이직한 경우 로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 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 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하고 그 이직한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 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7) · (8) (현행과 같음)

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생략)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 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 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 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현행과 같음)
<u>⑥</u>
1. · 2. (현행과 같음)
3 제46조이9에 따르 구지급여

- <u>5. 세40소위2에 따른 무석합</u> 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기준기간 동안 이직한 경우 로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 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 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하고 그 이직한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 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⑦·⑧ (현행과 같음)

(7)·(8) (생 략)